

시 민

문서번호	도시관리과-11675
결재일자	2015. 7. 29.
공개여부	비공개
방침번호	

주무관	도시빛정책팀장	도시빛정책추진반장	도시계획국장
협 조	주무관		



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후속 조치계획

2015. 7.

도시계획국
(도시빛정책추진반)

사전 검토항목

☞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'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 (※ 비고 :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)

구 분	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	검토 완료	해당 없음	비 고
시 민 참 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청책토론회, 설문조사, 시민공모 등 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전 문 자 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? 예) 자문위원회 개최, 타당성 검토, T/F 운영 등 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갈 등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,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사 회 적 배 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여성, 아동, 장애인, 한부모 가정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선 거 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? 예) 홍보물 배포, 표창수여, 경품지급, 기부행위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안 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장소·시설물 점검,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	<input type="checkbox"/>	■	
타 기 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타 기관 협의·협력(타 자원 활용 등)을 하였습니까? 예) 중앙부처, 타 지자체, 투자·출연기관, 민간단체 등 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홍 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? 예) 보도자료, 기자 설명회, 현장 설명회 등 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바 른 우 리 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●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? 예) 별첨, 첨부 ⇒ 붙임, 가이드라인 ⇒ 지침 등 	■	<input type="checkbox"/>	

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후속 조치계획

「조명환경관리구역」 지정 이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인공조명에 대한 자치구 전수조사 등 후속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추진코자 함.

I. 지정근거

-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('13. 2. 2. 시행)
-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(안) 방침 수립(시장방침 제374호, '14.12.26)
- 3대(빛공해, 소음, 악취) 시민생활불편 개선대책(시장방침 제156호, '15.6.14)
-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(행정2부시장방침 제254호, '15.7.16)

II. 그동안의 추진경위

-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용역 시행('13.8.28~'14.3.25)
 - 서울의 빛공해환경영향평가결과 빛방사허용기준 대비 평균 41% 초과
- 세미나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(7회, '14.3.25외 6)
 - 시민, 협회, 학회, 학계, 전문가, 구청 대상으로 세미나 및 자문 청취
- 시민여론조사(한국능률협회 컨설팅, '14.5.1~'14.5.25)
 - 조사결과 빛공해 불편을 느낀다고 조사되고 관리구역 지정 지지
-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(안) 열람공고 및 의견수렴('15.2.16~3.16)
 - 지역주민, 구청장, 시의회 의견수렴(도봉구 등 5개구, 시의원 의견제출)

- 좋은빛위원회(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) 심의 : 원안동의('15.4.7)
- 조명환경관리구역 단계적으로 지정 추진('15.5.7)
 - 1단계 : 녹지, 주거, 상업지역은 빛공해 시급성 감안하여 우선 고시
 - 2단계 : 공업지역은 토지이용현황 고려 세부적인 빛방사허용기준 신설 후 고시
- 조명환경관리구역 관계자 교육 및 매뉴얼 보급('15.5.18)
 - 가로등, 보안등, 공원등, 광고물, 장식조명 관계자(인원: 100명)

III.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개요

- 지정근거 :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(이하 '법'이라 함) 제9조
- 지정대상 : 인공조명(같은법 시행령 제2조)

< 인공조명 관리대상 >

- ◆ 공간조명 : 가로등, 보안등, 공원등
- ◆ 광고물 : 옥외광고물 중 허가대상(전광류, 돌출간판, 10m이상 가로형 간판 등)
- ◆ 장식조명 : 건축물 5층 또는 연면적 2,000㎡ 이상, 숙박, 위락, 교량 등에 설치된 조명

- 지정시기 : 2015. 7월(시행일 : 2015.8.10)
 - 1단계 : 녹지·주거·상업지역은 빛공해 시급성 감안 우선 지정('15.7월~)
 - 2단계 : 공업지역은 토지이용현황을 고려하여 추후 고시('15.12월~)

※ 환경부에서 법률 개정 중으로 추진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
- 지정방법 : 용도지역, 토지이용현황 등을 고려 제1종~제4종 구분

□ 지정현황 및 면적 : 578.44(km²)

조명환경 관리구역	지정현황	면적(km ²)	비율(%)
합 계		578.44	100
제1종	보전녹지지역, 자연녹지지역 (국립공원, 도시자연공원, 생태경관보전지역, 야생생물보호구역, 묘지공원)	111.94	19.35
제2종	생산녹지지역, 자연녹지지역(1종 제외지역)	134.27	23.21
제3종	주거지역(전용, 일반, 준주거)	306.28	52.95
제4종	상업지역	25.95	4.49

※ 2단계(준공업지역) : 27.52(km²) ⇒ 세부적인 빛방사허용기준 수립 후 고시

□ 종별 빛방사허용기준(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1항)

대상조명	측정기준	기준값	조명환경관리구역			
			제1종	제2종	제3종	제4종
공간조명, 전광류 광고물	① 주거지 연직면 조도 (lx)	최대값	10이하			25이하
광 고 물	② 발광표면휘도 (cd/m ²)	최대값	50 이하	400 이하	800 이하	1000 이하
전광류 광고물	③ 발광표면휘도 (cd/m ²)	평균값 (24시 전/후)	400/ 50이하	800/ 400이하	1000/ 800이하	1500/ 1000이하
장식조명	④ 발광표면휘도 (cd/m ²)	평균값	5이하		15이하	25이하
		최대값	20이하	60이하	180이하	300이하

※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전에 설치된 조명기구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음

V. 후속 조치계획

① 자치구별 실정에 맞게 세부적인 관리계획 수립·시행

【신설조명】 : '15.8.10일 이후부터 종별 빛방사허용기준 적용

【기존조명】 : 자치구별 전수조사를 시행하여 5년내 개선 추진

□ 【현 황】 국내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일선 자치구 관리계획이 없음

○(신설조명) 자치구별 광고물·장식조명이 다르게 관리되어 혼선 유발

- 빛공해 관리경험과 전문인력 부족, 업무기피 등의 사유로 체계적인 관리미흡

○(기존조명) 5년의 유예기간으로 자치구별 추진시 빛공해 관리 부실

- 자치구별 전수조사, 시기, 방법 등 통일적인 기준이 없어 빛공해 방지 지연 우려

□ 【개 선】 자치구별 통일적인 관리기준을 수립하여 점검·시행

○(신설조명) 계획단계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 빛공해 사전 방지

- **공간·장식조명**은 계획단계에서 좋은빛위원회 심의 수행(서울시, 자치구)
 - 자치구는 해당 조명에 대해 심의가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 강화
- **광고물**은 허가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도록 조건 부여 등 사전조치 강화(자치구)
 - 허가시 사전 시뮬레이션 등 자료를 활용하여 발광표면휘도 등 검토
- **준공단계**에서 실태조사 및 위반시 행정개선 유도(서울시, 자치구)
 - 서울시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서울시와 자치구간 합동점검 수행(필요시까지)
 - 광고물은 허가한 시설에 대하여 사후 현장점검 및 측정 시행(분기 또는 반기별)

○(기존조명)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 전수조사하고 5년 내 개선 추진

- 전수조사 : 조명환경관리구역 고시일로부터 ~ 1년 이내
- 점검자 : 자치구 관리부서(공간조명, 광고물, 장식조명) 수행
- 점검방법 : 빛공해 전담부서가 자치구 실정에 맞게 관리계획 수립(고시~1개월)
- 조치계획 : 조명기구 소유자가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유도

② 자치구 직원 등 정기적인 교육을 통해 야간경관 전문화 추진

- 자치구 등 관계자 교육, 세미나 개최, 매뉴얼 보급 등 교육 강화

□ **【현 황】** 빛공해 등 법정업무 신설로 인해 관계자 업무 인지도 미흡

○ 자치구의 빛방사허용기준 측정방법, 관리요령 등 전문성 부족

- 광고물, 장식조명은 빛공해가 생소한 업무로 점검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

○ 조명기구 측정장비가 없어 점검 등 관리업무 소홀

- 관리구역 고시와 동시에 분야별(광고물, 장식조명) 측정장비(휘도계) 구입 곤란

※ 휘도계 소요금액 : 1대당 33백만원

□ **【개 선】** 자치구 대상으로 교육시행 및 매뉴얼 작성·보급

○ 자치구 분야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시행

-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자치구 방문 순회교육 실시(매년 2회, 상·하반기)
- 빛공해 대응방법, 빛공해 방지대책 및 측정방법 등 세부적으로 교육 추진

○ 자치구 민원대응 및 업무절차 매뉴얼 보급으로 업무체계 정립

- 빛공해 현장 측정기준, 방법, 자료관리 등 측정 매뉴얼 마련
- 분야별(공간·장식조명, 광고물) 조명기구 측정장비는 자치구에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마련

※ 권한위임 범위내에서 빛공해 전담부서에 지급 검토

③ 야간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조직 및 인력 마련

【서울시】 : 관광 활성화 등 야간경관 보급을 위한 전담팀 신설 추진

【자치구】 : 자치구별 야간경관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확보 권고

□ 【현 황】 야간경관을 담당하는 조직 및 인력기반 취약

○(서울시) 도시빛정책 1개팀의 업무수행으로 전문성 등 관리한계 노출

-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에 따른 신규 법정업무 발생으로 업무량 증가
- 관광 활성화를 위해 일관된 야간경관 개발 및 보급 등 전문화 필요
- 2016년 국제도시조명연맹 서울총회, 빛축제 등 국제교류 사업 추진

○(자치구) 빚공해방지 등 야간경관이 부가업무로 취급되어 체계적인 관리 곤란

- 법 시행이후 빚공해 민원이 증가하는 추세('13년 773건→'14년 1,571건)
- 고시 이후 개선명령, 과태료 부과·징수 등 권한위임으로 업무 증가
- 장식조명, 광고물 시설현황 파악 등 전수조사 인력 필요

□ 【개 선】 야간경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신설 확보

○ 【서울시】 야간경관 개발 등 좋은빛 보급팀 신설 및 전문화 추진

-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, 빛축제 등 창설을 위한 팀신설
- 국내 최초 조명환경관리구역 제도정비, 환경영향평가 등 해당분야 전문관 지정

○ 【자치구】 빚공해를 포함한 야간경관 전담조직 신설토록 자치구 권고

- 빚공해 방지업무, 민원처리, 야간경관 활성화를 위한 팀신설 필요
※ 측정기준이 조도(lm/m²), 휘도(cd/m²) 등 전기분야 소관사항이고, 점검시 전기 안전등을 감안하여 전기직렬 확보 필요(2명 이상)
- 자치구 야간경관 주요업무

- ① 자치구 도시빛정책 수립·시행 / ② 빚방사허용기준 준수, 검사·조사
- ③ 빚방사허용기준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 / ④ 보고·자료 제출요구 및 검사
- ⑤ 과태료 부과·징수 / ⑥ 빚공해 민원관리 / ⑦ 좋은빛위원회 심의상정 등

④ 자치구로 권한위임을 통해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

- 권한위임 관련 「빛공해방지법」 개정과 연계하여 **조례개정** 추진

□ **【현 황】** '빛공해 방지 등 개선명령' 관련 행정권한을 시장이 소유

○ 시가 자치구에서 관리하는 인공조명에 대해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곤란

- 자치구 인공조명에 대해 시(市)에서 개선명령, 과태료 부과·징수, 정기 조사, 검사 등 빛공해 관리권한을 시장(市長)이 소유하고 있음

- 자치구 인공조명 현황

(단위: 개소)

구 분	계	공간조명(599,640)			광고물	장식조명
		가로등	보안등	공원등		
수 량	716,153	339,945	225,292	34,403	92,000	24,513

※ 총 광고물현황(신고대상 포함): 1,346,890개소

○ 시와 자치구 업무권한

시장의 권한

-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 검사·조사
-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
- 보고·자료 제출요구 및 검사
- 과태료 부과·징수

구청장의 권한

- 조명기구 소유자의 빛방사허용기준 준수
- 가로등·보안등·공원등 시설 및 관리
- 광고물, 장식조명 허가 및 관리
- 빛공해 민원처리 업무

□ **【개 선】** 빛공해를 실질적으로 관리하도록 구청장에 권한 위임

○ 빛공해 방지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해 시장권한을 구청장에 부여

- 권한위임 사무내용(시장 ⇒ 구청장)

- ◆ 빛방사허용기준 준수여부 검사 · 조사(법 제12조)
- ◆ 빛방사허용기준을 초과한 자에 대한 개선명령(법 제13조)
- ◆ 보고 · 자료 제출요구 및 검사(법 제17조)
- ◆ 과태료 부과 · 징수(법 제18조)

○ 「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」 개정과 연계하여 조례 개정 추진

- 권한위임과 관련하여 개정안이 국회 「환경노동위원회」에 상정중에 있어
법령과 연계하여 조례개정 추진

□ 권한위임 전까지 서울시와 자치구간 업무관계 정립

- 서울시 : 개선명령, 과태료 부과 등 법에서 정한 업무 수행
- 자 치 구 : 빛방사허용기준 준수, 빛공해 민원처리, 현장점검

VI. 추진일정

□ 자치구에 조명환경관리구역 후속 조치계획 배포(~'15.7월)

- 시행전(前) 이행사항 준비를 위해 사전 자치구 배포
- 체계적인 빛환경 관리를 위해 매뉴얼 작성 · 보급 병행 추진

□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및 고시('15.7월~)

- (1단계) 녹지 · 주거 · 상업지역은 빛공해 시급성을 감안 우선 지정('15.7월)
- (2단계) 공업지역은 세부적인 빛방사허용기준 신설 후 지정('15.12월~)

□ 사무위임 관련 빛공해방지법 조례개정 추진('15.7월~)

- 사무위임에 따른 개정방침 수립 및 관련부서(법무담당관 등) 협의
- 소관 상임위원회(도시계획관리위원회) 의견수렴 병행 추진

- 2015년 하반기 자치구 교육 시행('15.9월~)
 - 시 및 자치구, 산하기관 등 조명환경관리구역 관계자 교육 시행
 - 교육참여 등 효과를 높이기 위해 강남·북 권역 방문 현장 교육
- 관광 활성화를 위한 야간경관 전담조직·인력 개편('15.7월~)
 - 야간경관 전담팀, 전문관 지정 등 관련부서 협의(조직담당관, 인사과 등)

VII. 자치구 협조사항

- 자치구 실정에 맞는 조명환경관리구역 후속 조치계획 수립·시행
 - 시행된 날로부터 1개월이내 관리계획 수립 및 시(市) 제출
(빛공해 전담부서: 종합계획 수립 / 분야별 담당부서: 시설물 전수조사 및 개선유도)
- 빛환경 관리 세미나 및 교육 행사에 적극 참여
 - 자치구 방문 순회 교육시 강의실 대여, 교육 참석 등(매년 2회)
- 자치구 야간경관 전담조직 및 인력신설 확보
 - 위임사무, 빛공해 민원, 야간경관 등을 감안 별도 조직 신설
※ 전기분야 소관사항 임을 감안하여 전기직렬 확보 필요(2명이상)
- 자치구 조명기구 분야별(공간·장식조명, 광고물) 측정장비 확보
 - 조명환경관리구역 시행 후 신설조명은 발광표면휘도 등 점검관리 필요

붙임 : 1.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계획 1부(시장방침 제374호)
 2.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고시 1부(행정2부시장 방침 제254호). 끝.